

2023년도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 사업」 수행기업 모집공고

(재)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인프라 확대 추세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부품 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고자 「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 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3년 2월 13일
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 사업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3. 12. 15.
- 지원내용 : 친환경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·후방 분야의 R&D/마케팅 지원
- 지원대상 : 평택 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후방 분야 중소·벤처기업

- 공고일 현재 사업장(주된 사무소 또는 등록공장)이 평택시 소재이며,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 - ※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으로 확인
- 자율주행·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·후방 산업분야
 - ※ 단,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와의 관련성 제시 필수

지원대상

분야	전방산업		부품	후방산업	
	모듈/시스템	서비스/완제품		소재	가공
예시	사시조향운전석프론트 엔드 모듈 배터리팩 모듈 BMS, 센서 모듈 인터랙션 ADAS, 커넥티비티 인자판단 등	(인제품)친환경 자율주행 기반의 자동차 (서비스)커넥티드, 자율주행 등	차체 의장 사시 전장 파워트레인 차량용반도체 소자, 센서 등	금속비철금속소재 분말 소재 경량화소재 전해질 분리막 등	프레스, 주조, 단조, 압연 기계기공, 용접 등

※ 미래자동차 관련 기술 외 엔진시스템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외

<p>지원제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외기업군) 대기업 및 중견기업, 도소매 업종 등 ○ (정부부처·유관기관 중복과제)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된 경우, ②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·유사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“메뉴 → 사업과제 → 세부과제 검색” ○ (책임자 소속) 공고일 현재 과제 책임자가 사업신청 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4대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○ 주관·참여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대상이거나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제한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.go.kr) → 과제관리 → 제재정보조회 등 ○ (의무사항 불이행)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- 부도,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-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(법원 회생인가 기업제외),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-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500% 이상 완전 자본잠식 -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○ (허위사항)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·거짓인 경우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○ (협약기간내 위반) 지원기업 선정 후 사후 위반사항 발견 시 사업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기간 중 본사 관외 이전,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
<p>선정기업 의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지원금 100%에 대해 협약 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증기간 : 사업기간+6개월 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며 사업비 소급 가능 ○ 성과활용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조사기간)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결과 보고 - (점검사항) 매출, 고용 및 기타 실적 등 ※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은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 세부 지원내용

세부 프로그램 I	지원내용	지원한도																			
① R&D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유중인 기술(제품)의 성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○ 미래자동차부품 전후방 분야와 관련된 신기술(제품)의 개발 지원 * 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차등지원(최대 지원금 최대 30백만원) 	3개사 내외 (25백만원 내외)																			
(지원내용)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제품 개발 및 기존제품 성능개선, 응용기술 개발 - 소재, 설계, 제조 등 관련 분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- 인증용 시제품 및 Tool 등 개발을 통한 역량강화 및 상용화 기술 개발 ※ 상기 내용 외 사업추진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 지원 																					
(개발주제)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유과제 (미래자동차부품 전후방 분야와 관련된 제품개선 및 신제품 개발) 																					
(지원항목)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료비(개발에 소요되는 소모성 제품), 시제품 제작비, 연구활동비, 과제홍보비, 기술도입비, 연구기자재 임차비, 품질검증비, 전문가 활용비 등 ※ 지원금 사용 및 지원 세부사항은 사업신청서 내 별지1 참조 																					
(지원금)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평가 시 사업비 조정심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※ 기업당 25백만원 내외, 사업비 조정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30백만원(부가세 제외) -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액(부가세 제외)으로 총사업비 중 30% 이상 기업부담 必 ※ 단,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5% 이내,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에서 계상 - 총사업비 편성 예시 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지원금</th> <th colspan="2">기업부담금</th> <th rowspan="2">총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(인건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금액(천원)</td> <td>24,500</td> <td>5,250</td> <td>5,250</td> <td>35,000</td> </tr> <tr> <td>비중(%)</td> <td>70</td> <td>15</td> <td>15</td> <td>1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분	지원금	기업부담금		총사업비	현금	현물(인건비)	금액(천원)	24,500	5,250	5,250	35,000	비중(%)	70	15	15	100
구분	지원금	기업부담금		총사업비																	
		현금	현물(인건비)																		
금액(천원)	24,500	5,250	5,250	35,000																	
비중(%)	70	15	15	100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당초 계획 대비 집행액 비중이 줄어든 경우, 지원금이 기업부담금 매칭비율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 																					
(유의사항)	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정 시 지원금액의 100%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발급 필수 - 협약종료율로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으로 설정 																					
○ 사업비 지급절차																				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협약 체결 (선정기업 ↔ 진흥원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1차 사업비 지급 (지원금의 70%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중간점검 [현장방문] (진흥원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2차 사업비 지급 (지원금의 30%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성과평가 (진흥원) </div> </div>																					

세부 프로그램II	지원내용	지원한도
② 마케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브랜딩 지원) 기업 브랜드 방향 도출 및 CI·BI 개발 지원 ○ (시장반응조사) 기업보유 기업(제품)의 국내외 시장성 분석 ○ (홍보물 제작) 브로슈어, 리플렛, 포스터 등의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○ (온라인 마케팅) 홈페이지·앱 제작 및 리뉴얼,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○ (영상제작) 기업·제품(기술) 홍보를 위한 홍보 영상물 제작 ○ (번역지원)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 번역지원 ○ (국내외 전시회 참가) 부스 임차비 지원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* 여비·전기·기자재 이용 등 기타 부대비용 제외 	10개사 내외 (3백만원)
<p>(지원내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브랜딩, 시장조사, 온라인 마케팅, 영상제작, 번역,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※ 지원금 한도(3백만원) 내에서 패키지 지원 가능 <p>(지원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당 3백만원 한도 내 지원(부가세 제외) - 기업부담금 없음 		
<p>○ 사업비 지급절차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gap: 2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협약 체결 (선정기업 ↔ 진흥원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"> 성과평가 (진흥원) 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24px;">▶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f0f0f0;"> 사업비 지급 (지원금의 100%) </div> </div>		

3 선정방안

① R&D 지원

□ 심사방법 : 서류검토, 현장점검, 발표평가

- (서류검토) 진흥원 담당자가 제출서류 적정성 및 자격요건 검토
- (현장점검) 진흥원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1인등 기업 방문 후 점검
- (발표평가) 기업 당 25분 내외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)
 - 위원구성 : 경영·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총 5인 이내
 - 선정기준 :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, 고득점 순
 - ※ 평가 시간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가능

□ 심사기준 : 기업현황, 기술성, 시장성, 기대효과 등 평가

② 마케팅 지원

□ 심사방법 : 서류검토, 서류평가

○ (서류검토) 진흥원 담당자가 제출서류 적정성 및 자격요건 검토

○ (서류평가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의 적절성 검토

- 위원구성 : 경영·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총 5인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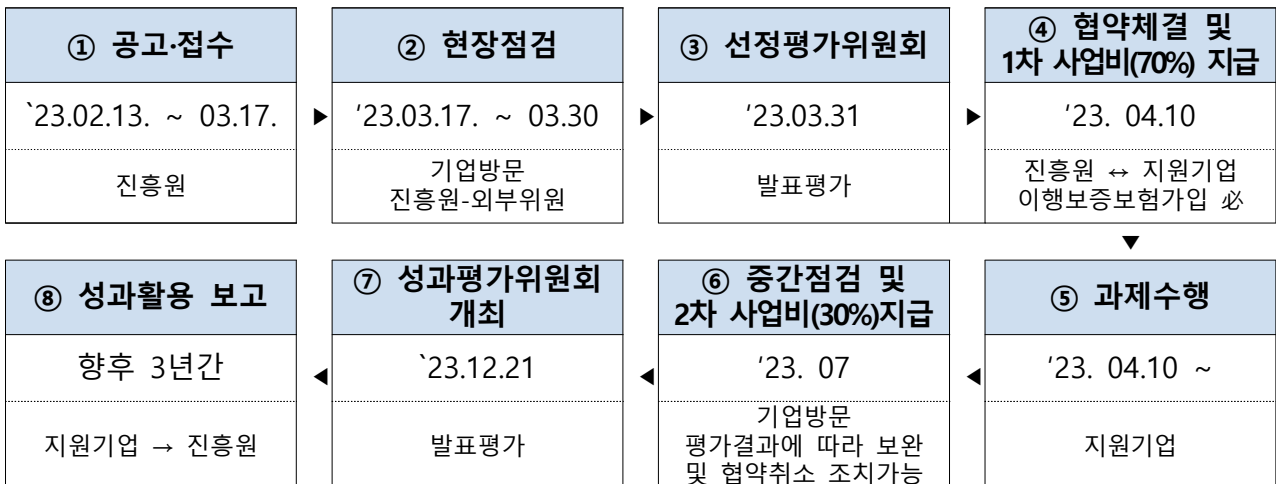
- 선정기준 :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, 고득점 순

※ 평가 시간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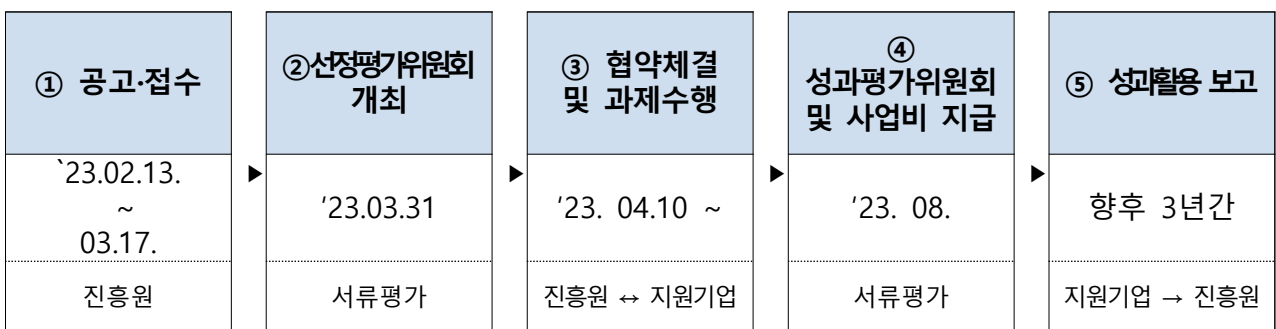
□ 심사기준 : 기업현황, 경쟁력, 사업성, 기대효과 등

4 추진일정

1) R&D 지원



2) 마케팅 지원



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, 불성실 수행이나 사업내용 미이행, 사업비 부정사용 등으로 판정 시 1차 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 가능

5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- 교 부 처 : 평택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pipabiz.or.kr>)
- 접수기간 : 사업공고일 ~ 2023. 03. 17. (금)까지
- 신청방법 : 방문 및 우편(직인 날인) 접수
- 제 출 처 : (18014) 경기 평택시 고덕여염9길 37 평택상공회의소 408호
기업지원팀 담당자 앞
- 문 의 처 : (재)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
 - 이미희 선임연구원(☎ 070-8874-7128, ✉ mhlee@pipabiz.or.kr)
- 제출서류
 - ① R&D 지원

연번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	원본 1부 사본 7부	붙임 1
2	연구개발 요약서		붙임 2
3	수행계획서(연구개발 지원)		붙임 3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참여인력 전원)	원본 1부	붙임 4
5	청렴이행서약서	원본 1부	붙임 5
6	최근 2개년 재무제표 (국세청 홈택스 등)	사본 1부	-
7	사업자등록증	사본 1부	-
8	법인등기부등본 1부	사본 1부	-
9	국세/지방세 납입증명서	사본 1부	-
※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※ 필요시, 평택시 내 중소기업 소재지 확인서류 추가제출 ※ 제출서류가 '사본'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			

② 마케팅 지원

연번	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	원본 1부/사본 7부	붙임 1
2	수행계획서(마케팅 지원)		붙임 3-1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참여인력 전원)	원본 1부	붙임 4
4	청렴이행서약서	원본 1부	첨부 5
5	최근 2개년 재무제표 (국세청 홈택스 등)	사본 1부	-
6	사업자등록증	사본 1부	-
7	법인등기부등본 1부	사본 1부	-
8	국세/지방세 납입증명서	사본 1부	-
※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※ 필요시, 평택시 내 중소기업 소재지 확인서류 추가제출 ※ 제출서류가 '사본'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			

6 유의사항

- R&D 지원 프로그램의 선정기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, 하도급 및 주관/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
-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, 이를 어길 경우 해당기업은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-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신청 가능함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사항에 대하여,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함
-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등급 산정 및 후속사항 조치 가능

평가 등급	평가등급의 판정기준	후속조치
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점수 70점 이상, 사업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 하였으며, 사업 추진전략이 구체적이고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평가되는 과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비 잔액 반납 및 과제 종료
성실 실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점수가 70점 미만,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사업비 집행실적에 문제가 없는 과제 - 향후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 추진 의지가 강한 과제 	
불성실 실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균점수가 50점 미만, 사업수행결과가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비 집행상 중대한 회계적 문제가 발생한 과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• 진흥원 시행사업 3년간 참여제한